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51 발의연월일: 2020. 12. 28.

발 의 자:양금희·태영호·성일종

지성호 · 윤창현 · 강민국

김기현 • 권명호 • 김정재

윤재옥 • 황보승희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발표(2019.10.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분 야 대학의 실험·실습실 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경우가 225건(전년 대비 17.8% 증가)에 이르고 있고 중상의 경우에는 장기간 수억 원의 치료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한도액이 피해 학생의 건강과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험가입 보상금 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 에 종사하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 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치료비지원) 정부는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대학 등의 대학생이 제26조의 보험가입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실사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치료비지원) 정부는 중
	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
	등의 대학생이 제26조의 보험
	가입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
	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생에게 치료비를 지
	원할 수 있다.